**[COMEX 상표권 관련 사안 정리]**

1. **상표권 측면**

* 국내에서 ‘상표법’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보호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한정되지만

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

에만 인정.

* 아래 법조문**\***에 의하면 동일 상표를 동종업종 혹은 동일/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

해당 상표를 충분히 떠올리게 하는(위조 목적 유사상표)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며

후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.

(\*과실: 경과실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피고가 동종업종/동일상표가 없는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추정됨.)

**-** 이에 따라 국내에서 코멕스로 등록된 상표 중 동종 업종으로 추정되는 곳은 1곳,

코맥스(유사상표) 1곳임.

* 코멕스시스템 주식회사: 1994.08.23 등록. 현재 홈페이지 등 정보가 조회되지 않음.

(소멸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적 불가)

* 코맥스: 스마트 홈 loT 전문 기업
* 암호화폐 거래소의 업종은 ‘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’,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체는

‘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’임. 따라서 상기 두 회사가 동종업종

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.

* 밸류비의 COMEX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며 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’ (이하 특금법)에 적용을 받음. (즉, 상표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상기 회사들과 법적 논쟁이 발생할 확률도 낮다고 보임.)
* 따라서 국내에서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됨.

**\*)** 상표법 인용

- 제108조(침해로 보는 행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

(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)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
1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
2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
3.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
4.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
1.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(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
2.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
3.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
4.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

- 제109조(손해배상의 청구)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

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**CME-시카고상품거래소-의 도메인이 comex.com인 측면**

* 도메인은 유일하므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유사한 도메인 네임에 대해 배척할

권리는 없음. (즉, 상표와 달리 보호되는 근거 법령 부존재)

* 참고로 상표법에서의 외국 상표에 대한 적용\*\*을 보면,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

해당 상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해야 함.

(e.g. 광고효과)

* 따라서 동일한 도메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CME의 B.I와 동일/유사한 상표를

사용해야 법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임.

**\*\*)** 상표법 인용

* 제34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

13항.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(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)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

14항.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